Sunshine GWANGYANG

광 양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시 보

제47호 2026. 11. 25.(수)

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6-303호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 ····· 1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6-2438호 공시송달공고 ····· 3
광양시 공고 제2026-2440호 공시송달공고 ····· 4
광양시 공고 제2026-2463호 공시송달공고 ····· 6

회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713, 행정2713)

광양시 고시 제 2026 - 303 호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11. 25.

광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840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6. 11. 25. 고시 후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물번호 부여 1건					
1	건물번호 부여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840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 1150-115	20261125	20090623	옛 지명에서 인용

광양시 공고 제2026 - 2438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가설건축물 허가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「건축법」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 실시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11월 18일

광 양 시 장

1. 공 고 명 :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6. 11. 18. ~ 2026. 12. 3.(15일간)

3. 공고장소 :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4. 공시송달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: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
나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아래 참조
다. 법적근거 및 조문 :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,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

연번	처분 당사자	건 축 물 소 재 지	처분내용	반 송 주 소	반송사유
1	농업회사 법인 설*원 합자회사	광양시 마동 산72-1번지	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장로 120 20*동 120*호(중동, 태영2차아파트)	보관기관 경과 후 반송

5. 유의사항

○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건축과(☎061)797-318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공고 제2026 - 2440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가설건축물 허가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「건축법」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 실시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11월 18일

광 양 시 장

1. 공 고 명 :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6. 11. 18. ~ 2026. 12. 3.(15일간)

3. 공고장소 :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4. 공시송달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: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
나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아래 참조
다. 법적근거 및 조문 :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,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

연번	처분 당사자	건 축 물 소 재 지	처분내용	반 송 주 소	반송사유
1	서*운	광양시 중동 1252번지 외 1필지	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장로 120 20*동 120*호(중동, 태영2차아파트)	보관기관 경과 후 반송

5. 유의사항

○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건축과(☎061)797-318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의견제출인</td><td colspan="2">성명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의견제출
내용</td><td colspan="2">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당사자</td><td>성명(명칭)</td></tr>
<tr><td>주소
(전화번호:)</td></tr>
<tr><td>의 견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 타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광양시 공고 제2026 - 2463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제14조(건축신고)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0일

광 양 시 장

1. 공 고 명 :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

2. 공고기간 : 2026. 11. 23. ~ 2026. 12. 7.(14일간)

3. 공고장소 :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

4. 처분원인 및 처분내용

연번	행위자	위반건물 소재지	처분원인 (위반내용)	처분내용	위반사항	미배달사유
1	박*재	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63-1	건축법 위반	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	증축(18m^2)	폐문부재 수취인불명

5. 안내사항

○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, 「건축법」 제80조 및 「광양시 건축조례」 제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정 완료 시까지 연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건축과(☎061)797-288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